

| 신청기관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중국무형문화유산법의 소개

김 대 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조교수

I. 들어가며

21세기 들어 ‘무형문화유산’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 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⁰¹ 세대 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길고 긴 시간의 흐름에 있어 앞 세대에서 현 세대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무형문화유산은 오늘날 국가나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 및 문화적 힘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용어로 ‘非物質文化遺產’을 사용하고 있고, 그와 관련 한 법률의 공식명칭도 ‘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이다.⁰² ‘非物質文化遺產’이란 유네스코가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Oral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개념을 제기한 뒤 중국에서 이를 수용하며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 개념이 도입되어서 논의되

⁰¹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제2조 정의 참조 ; 해당 협약은 2003년 10월 17일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2006년 4월 20일부터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9일 수락서를 기탁하였고, 2006년 4월 20일부터 발효하였다. 해당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조약정보 웹사이트에서 확인 (http://www.mofa.go.kr/www/wpge/m_3835/contents.do).

⁰² 중국에서 ‘非物质文化遺產’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7년 『武当学刊』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詹正发의 「非物质文化遺產的法律保护」라는 논문에서 비롯한 것으로 전한다.

던 초기에는 ‘무형문화유산’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非物質文化遺產’이란 용어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⁰³

본 글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의 소개를 위해서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법률의 주요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비물질문화유산’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우리나라에서 쓰는 ‘무형문화재’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은 유네스코 협약과 관련성을 가지며 제정된 것이므로, ‘비물질문화유산’ 대신 ‘무형문화유산’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도 ‘중국무형문화유산법’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II. 법률의 제정과정

중국에서 본격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은 장쩌민 정권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주류이다. 1978년에 개혁개방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에 따른 도시화의 진행, 경제 인프라의 정비, 농촌에서 노동력의 유출 등은 농촌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농촌지역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였던 전통문화나 민족문화의 대부분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라지거나 내용이 바뀌어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은 많지가 않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거센 도시화는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의 소실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계, 문화계에서는 농촌지역의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통문화의 보호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기존의 보호체계를 손질하고 새로운 보호체계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후진타오 정권기에 들어서는 민속학, 무형문화유산학이 많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 등의 발전이 있었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목표로 전통문화의 진흥 및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⁰⁴

⁰³ 김우석,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에 관한 초보적 고찰」, 『中國學報』(vol.68), 한국중국학회, 96면, 2013.

⁰⁴ 白松強, 「世界無形文化遺産時代における中国の無形文化遺産保護に関する一考察」, 『非文字資料研究』(第11号), 神奈川大学日本常民文化研究所 非文字資料研究センター, 81頁, 2015.

중국에서 중국무형문화유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령이 개혁 전과 개방 후를 통하여 그 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론이나 문화정책학의 분야에서도 무형문화유산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11년 2월에 중국무형문화유산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정책이나 문화행정에 관한 확고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이르는 법제정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그 형태가 갖추어져서 2002년 이후 현격한 진전을 보였던 무형문화유산 관련 여러 움직임이 바탕이 된 것이다.⁰⁵

국제적으로는 1998년 10월 제155회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Proclamation of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이라는 규약이 채택되었다.⁰⁶ 이에 따라 유네스코에서는 2001년 5월 제1회 19건의 걸작 선언, 2003년 11월 제2회 28건의 걸작 선언, 2005년 11월 제3회 43건의 걸작 선언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제1회에는 昆劇을, 제2회에는 古琴을, 제3회에는 신장 위구르 무寇과 몽골 우르틴두 등을 추천하였다. 이후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채택되어 2006년부터 발효함에 따라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노력에 호응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003년 10월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채택되자, 2004년 8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신속하게 중국정부의 협약 가입을 결정하였다. 국내 관련 법률의 정비가 협약 가입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중국무형문화유산법’은 국제조약과의 관련성 하에 제정된 것이었다. 2005년 3월 국무원에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강화에 관한 의견서가 공표되고, 동시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에 관한 신청·평가 임시조치법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각 부서의 연합회의제도가 정해졌다. 2005년 12월에는 국무원에서 문화유산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

⁰⁵ 白松強, 「世界無形文化遺産時代における中国の無形文化遺産保護に関する一考察」, 『非文字資料研究』(第11号), 神奈川大学日本常民文化研究所 非文字資料研究センター, 85頁, 2015.

⁰⁶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발효 이전에는 법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등록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전승 가치를 가진 세계의 구전전통 및 무형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정부 및 NGO, 지방공공단체에 구전 및 무형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장려하고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으로 공표하였다. 걸작 선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네스코 웹사이트를 참조 (<https://ich.unesco.org/en/proclamation-of-masterpieces-00103>).

였는데, 전국 규모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정부의 최중요 과제로 규정한 것이었다.⁰⁷

2006년 10월 문화부에서는 우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제정하였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임시조치는 2006년 5월에 국무원에서 지정한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효과적 보호와 전승을 목표로 그와 관련된 보호업무의 관리·조직·협조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다. 이후 2008년 5월 문화부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항목 대표적 전승인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도 제정하였다. 이 임시조치는 2007년 6월 문화부에서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항목 대표적 전승인을 지정한 이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다.⁰⁸

2011년 2월 25일에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이 통과되었다. 중국무형문화유산법의 초안은 문화부에서 광범위한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2006년 9월 국무원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다. 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는 법안명에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는 것이었다.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보호’라는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동태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10년 6월에 개최된 국무원 제115차 상무회의에서 중국무형문화유산법의 초안이 통과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어 이듬해인 2011년 2월 2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총 6장 45개조로 구성된 중국무형문화유산법이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⁰⁹

이와 같이 중국무형문화유산법에 제정되기까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의 경과 및 주요 전개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07 정준호, 「중국 무형문화유산제도의 형성과 정책관리체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vol.29 no.1), 한국자치행정학회, 421-2면, 2015.

08 정준호, 「중국 무형문화유산제도의 형성과 정책관리체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vol.29 no.1), 한국자치행정학회, 422면, 2015.

09 정준호, 「중국 무형문화유산제도의 형성과 정책관리체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vol.29 no.1), 한국자치행정학회, 422-3면, 2015.

10 김우석,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에 관한 초보적 고찰」, 『中國學報』(vol.68), 한국중국학회, 99-100면, 2013.

유네스코 협약 가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 실시	
1998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결정
2003년	유네스코 총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채택
2001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대표작 목록 발표
2004년 8월 28일	중국 全國人大常委會 '非物質文化遺產保護公約' 비준 결정
2004년 4월 8일	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 실시
2005년 3월 26일	'加強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 발표
2005년 6월 9일	非物質文化遺產普查工作 실시
2005년 12월 22일	國務院關於加強文化遺產保護的通知
2006년 6월 10일	文化遺產節 (매년 6월 둘째 토요일)

국가급 목록 및 전승인 지정 명단 작성	
2006년 5월 20일	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총518항 발표
2008년 6월 7일	第二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총510항 발표 (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擴展項目名錄총147항)
2011년 5월 23일	第三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총191항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擴展項目名錄총164항)
2007년 6월 5일	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名單 226명
2008년 1월 26일	第二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名單 551명
2009년 5월 26일	第三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名單 711명
2012년 12월 20일	第四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名單 498명

총체적 보호와 생산적 보호	
2010년 2월 10일	文化部關於加強國家級文化生態保護區建設的指導意見
2011년 10월 31일	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生產性保護示範基地公示名單 발표 (36개 국가급 항목에 해당하는 36개 기업이나 단위)
2012년 2월 2일	文化部關於加強非物質文化遺產生產性保護的指導意見
2007년 2월 12일	商務部文化部關於加強老字號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通知

법제화	
2006년 11월 2일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保護與管理暫行辦法 시행
2008년 6월 14일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認定與管理暫行辦法 시행
2011년 6월 1일	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 시행

III. 법률의 주요내용

중국무형문화유산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 제4장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전파,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각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제1조~제10조)에서는 우선 법제정의 목적을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제1조).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의 일부로 각 민족 인민들이 대대로 전승해 온 각종 전통문화의 표현형식 및 그 전통문화의 표현형식과 관련된 실물, 장소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제2조).¹²

- (1) 전통 구두문학 및 그 매체로서의 언어
- (2) 전통 미술, 서예, 음악, 무용, 연극, 민속예술 및 곡예
- (3) 전통 기예, 의약 및 역법
- (4) 전통 의례, 축제 등의 민속
- (5) 전통 운동경기 및 오락
- (6) 기타의 무형문화유산

이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 사용에 준수되어야 할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증, 기록, 등록 등의 조치로써 그를 보존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면서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가진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승, 전파 등의 조치로써 보호한다(제3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¹¹ 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의 구체적 내용은 중국 全国人民代表大会 웹사이트에서 확인 (http://www.npc.gov.cn/npc/xinwen/2011-02/25/content_1625677.htm).

¹² 우리나라의 경우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및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보호는 그 진실성과 전체성, 전승성을 중시해야 하고, 중화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의 강화,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의 옹호, 사회의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제4조). 무형문화유산을 사용할 때는 그 형식과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왜곡이나 편웨 등의 방식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사용은 금지된다(제5조).

국나나 지방정부의 책임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고, 재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사업을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또한 보호, 보존을 위한 비용을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국가는 민족지역, 변방지역, 빈곤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사업을 지원한다(제6조).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전국 범위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사업에 책임을 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사업에 책임을 지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사업에 책임을 진다(제7조).

이외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나 포상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전체의 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제8조).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제9조).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준다(제10조).

제2장(제11조~제17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및 조사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사업의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를 기획하는데,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는 문화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관련부서는 담당 분야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11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때는 조사대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풍속과 관습을 존중하여야 하며,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제16조).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시 정보의 공유나 공개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를 할 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인증, 기록, 등록을 하고, 조사정보 공유 체제를 확립하고 건전화해야 하며, 무형문화유산 구성부분의 대표적인 실물을 수집하고,

적절하게 보존하여 손상,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제12조). 그리고 문화주관부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련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무형문화 유산정보 파일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형문화유산 파일 및 관련 데이터 정보는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제13조).

공공기관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4조). 이 외에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에도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5조). 그리고 조사 종료 후에는 조사를 허가한 문화주관부서에 조사보고 및 조사에서 취득한 실물도면,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 단체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경우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학술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제15조).

제3장(제18조~제27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무원에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지방 정부의 추천 및 개인·단체의 제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무원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을 작성해서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체현하고, 중요한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가진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목록에 수록하여 보호한다(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에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에 추가할 항목을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에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에 있어서는 항목 소개, 전승상황 소개, 보호 필요성, 기타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도 무형문화유산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체현하고 중요한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문화주관부서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에 수록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제20조).

다음으로는 국무원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 심의 및 승인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전문가 심사평가단 및 전문가 평가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에 수록할 것이 추천 또는 제안 된 무

형문화유산 항목에 대해서 초기평가와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심의업무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제22조).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에 수록할 예정인 항목을 공표하여 20일 이상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제23조), 전문가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공개결과에 따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목록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공표한다(제24조).

국무원이나 지방정부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보호계획을 수립, 제정하여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의 보호계획을 제정할 때는 소멸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인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5조).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이 집약적이고, 특색이 선명하며, 형식과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문화주관부서에서 특별한 보호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지역전체를 보호할 수 있다(제26조). 그리고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의 보호계획의 실시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하며, 보호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처리하여야 한다(제27조).

제4장(제28조~제37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전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표적 전승인의 인증과 지원, 전승인의 의무, 무형문화유산의 홍보·지원에 관한 것이다.¹³ 즉,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의 전승, 전파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제28조),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승인, 공표한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에 대해서 대표적 전승인 인증할 수 있다(제29조). 그리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필요에 따라 전승장소를 제공하거나, 전승에 필요한 경비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의 대표적 전승인이 전승, 전파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제30조). 대표적 전승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승활동, 후계인재의 육성, 관련 실물·자료의 적절한 보존, 문화주

¹³ 중국 전승인 지정종목 선정은 '100년 이상 역사+3대 이상 전승'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중국 무형유산의 경우 소멸위기 종목이 아니라 국가주의적 과시·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잘 조직된 종목을 지정한다. 아울러 유네스코등재가 현실적인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전지영, 「중국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명암과 한국 무형유산 정책의 현주소」, 『한국전통공연예술학』(vol.5),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43면, 2016)

관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의 조사활동 협력, 무형문화유산의 공익적 홍보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주관부서는 그 대표적 전승인의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항목의 대표적 전승인을 다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무형문화유산의 홍보·지원에 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언론,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문화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가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에 대한 홍보, 전시를 기획하여야 한다(제32조).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과학기술연구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방법의 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기록과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 정리, 출판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제33조). 학교는 국무원 교육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교육을 전개하여야 하고, 언론은 무형문화 유산의 대표적 항목을 홍보하여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야 한다(제34조). 또한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등 공공문화기구 및 무형문화유산 학술연구기 구, 보호기구와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개설한 문예공연단체, 공연장운영기구 등은 각자의 업무범위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리, 연구, 학술교류 및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의 홍보, 전시를 하여야 한다(제35조). 그리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단체를 지원하여야 하며, 단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세금혜택을 받는다(제37조).

끝으로 제5장(제38조~제42조)과 제6장(제43조~제45조)에서는 각각 법적 책임과 부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에 있어서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제38조). 문화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를 실시한 때에 조사대상의 풍속, 관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제39조).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구성부분인 실물과 장소를 파괴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제40조). 외국 단체나 외국인 개인이 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화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 및 조사 중에 취득한 실물, 자료를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벌금을 병과한다(제40조·제41조). 그리고 본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

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제42조).

부칙에서는 지방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의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3조), 무형문화유산의 이용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하고, 전통의약, 전통공예·미술 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법의 시행에 관해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참고문헌

- 김우석,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에 관한 초보적 고찰」, 『中國學報』(vol.68), 한국중국학회, 2013.
- 전지영, 「중국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명암과 한국 무형유산 정책의 현주소」, 『한국전통공연예술학』(vol.5),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016.
- 정준호, 「중국 무형문화유산제도의 형성과 정책관리체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vol.29 no.1),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 白松強, 「世界無形文化遺産時代における中国の無形文化遺産保護に関する一考察」, 『非文字資料研究』(第11号), 神奈川大学日本常民文化研究所・非文字資料研究センター, 2015.
-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https://ich.unesco.org/).
- 중국 全国人民代表大会 (http://www.npc.gov.cn/).